

## 2024년 12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2024년 12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 I. 주요 입법 동향

####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22건)

공포(시행)일자	법령명 (고시 등)	주요 개정 내용	비고
'24. 12. 4.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과징금 및 과징금 감면금액 산정 기준과 과징금 감면 대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고시로 제정	폐기물
'24. 12 4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의무생산자와 생산실적 거래를 원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매년 3월말까지 지난 연도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시로 제정	폐기물
'24. 12 5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도시생태현황지도 비오톱 유형을 소분류까지 명시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시에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하여야 함을 명시하며, 토지피복현황도와 토지피복지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리	자연
'24. 12 5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신규화학물질 고유번호 19건을 수정하고, 53건의 유해성 등을 신설하며, 기존 화학물질 3건을 신설	화학
'24. 12 5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한물질에 백석면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삭제하고, 금지물질로 청석면 등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백석면을 추가	화학

'24. 12.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액비 살포 시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농작물 재배시설이 토지에 고정되어 있으면 흙 갈기 또는 로터리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며,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축분뇨처리업이 준수해야 하는 방류수 수질 측정 주기를 3개월로 명시	수질
'24. 12. 12	토양환경법 시행규칙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등의 기준이 되는 불소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종전에는 1지역 400mg/kg, 2지역 400mg/kg, 3지역 800mg/kg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지역 800mg/kg, 2지역 1,300mg/kg, 3지역 2,000mg/kg으로 완화	토양
'24. 12. 19	(생태통로 설치 대상지역에 대한 고시)	개발사업 등의 시행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어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 등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정	자연
'24. 12. 23.	(폐기물처분 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직권부과신설, 감면기준 확대, 산출기준 조정 등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유사 사례에 준하여 5년으로 정하고, 납부 승계, 압류해제 등 징수 절차를 구체화	폐기물
'24. 12. 23.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순환자원지정사업자"를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별로 폐기물발생감량률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하며,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순환자원의 이물질·유해물질 함유량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분석결과서는 이물질·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적용받는 순환자원의 경우에만 제출	폐기물
'24. 12. 23. (25. 1. 1.)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 및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및 학원에 대한 초미세먼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50 $\mu\text{g}/\text{m}^3$ 이하에서 40 $\mu\text{g}/\text{m}^3$ 이하로 강화	대기
'24. 12. 24. (25. 1.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이 화학·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사무기구의 조사관 등을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이 단원 중에서 단장을	화학

		<p>지명하도록 하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된 업무 중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유효기간 갱신 신청 자료의 사전 검토 등을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 위탁하고, 환경부장관의 살생물제품피해 원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p>	
'24. 12. 2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p>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범위를 지역아동센터 전체로 확대하고, 시·도지사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 부지 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 및 그에 따른 휴경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p>	화학
'24. 12. 24. (25. 1.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p>석면피해판정위원회·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부장관이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조사·연구 등을 위해 3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환경부장관이 1명,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2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p>	화학
'24. 12. 24. (25. 1. 1.)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시행령	<p>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자와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자 및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 촉진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p>	폐기물
'24. 12. 24. (25. 1. 1.)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p>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및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이 사무기구의 조사관을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1종사업장인 소기업의 시설에 대하여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을</p>	화학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24. 12. 24.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 기준)	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 가방, 자동차용 매트 및 용품,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서비스, 문화시설 등 6개 제품군을 추가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6개 제품군과 통합으로 3개 제품군을 삭제하며, 전기레인지 등 6개 제품군 인증기준을 신설하고, 가스 캐비닛 히터 등 10개 제품군 인증기준을 통합 및 폐지하며, 인쇄용지 등 24개 제품군 인증기준을 개정	기타
'24. 12. 24.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대상물질 확대에 따라, 특정 연도에 배출저감계획서 제출이 집중될 수 있어 사업장 규모(종업원수)에 따라 5년간 분산 제출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정책적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 서식을 구체화	화학
'24. 12. 27.	(1회용품 사용 규제(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식품접객업, 제과점업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인증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허용	폐기물
'24. 12. 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반입협력금 징수 대상 생활폐기물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종량제 봉투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로 정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보관량·처리기한을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확대하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경고로 하며, 재활용 유형란에서 폐가구류를 별도로 분류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폐기물
'24. 12. 30.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 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공장심사 통과 후 제품시험에서 불합격함에 따라 다시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을 이용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서 재발급 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수질

'24. 12. 31.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며,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에 관한 광고의 금지·제한 대상을 기존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로 확대	수질
--------------	--------	---	----

## 2. 주요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18건)

예고기간	법령명 (행정규칙명)	주요 내용	비고
'24. 12. 2. ~ 12. 23.	(포장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일회용 수송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 제품포장규칙의 개정 내용을 대상제품의 범위, 검사명령, 지도·점검 등에 반영하고, 재포장 금지의 세부 절차 등을 반영	폐기물
'24. 12. 5. ~ '25. 1. 1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관련 해양생태독성 검사종 및 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염인정 신청요건 확대 등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을 방류수 수질기준과 배출허용기준에 동일하게 적용	수질
'24. 12. 5. ~ '25. 1. 14.	하수도법 시행규칙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관련 해양생태독성 검사종 및 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염인정 신청요건 확대 등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	수질
'24. 12. 10 ~ 12. 19.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유독물질 관리체계가 개편되어,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 적용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8월 7로 개정하고,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일 이전까지 취급하던 자에게 경과규정을 적용하며,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규정을 2026년 7월 1일로 조정	화학
'24. 12. 11. ~ '25. 1. 2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최소 처분 능력을 100→50kg/hr으로 완화	폐기물
'24. 12. 11. ~ '25. 1.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혈액을 제외한 체액·분비물·객담 등 인체 분비물 자체도 의료폐기물(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	폐기물
'24. 12. 12. ~'25. 1. 2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폐기물

	법률 시행령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가 해당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덮개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허가권자가 부여할 수 있는 추가 허가조건에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문구를 삭제	
'24. 12. 12. ~'25. 1. 2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관이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1차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처분으로 완화하고, 건설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단순·경미한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기준을 완화	폐기물
'24. 12. 12. ~ '25. 1. 2.	(건설 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배출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위반사실 공표제가 시행되어, 매년 4월말에 위반사실을 1년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로 제정	폐기물
'24. 12. 12. ~ 12. 31.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기준)	유리병의 경우 몸체가 "무색"인 경우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의 경우 몸체가 무색 PET이고, 잡자재 등을 미사용 시 '재활용 최우수' 등급으로 신설	폐기물
'24. 12. 16. ~12. 2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및 지역사회 고지의 용어와 문구 정비,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고지 방법 확대로 행정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며, 지역사회 고지 용어와 시기를 명확화	화학 (화학물질 안전원)
'24. 12. 16. ~12.27.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금속캔 등 포장재 5종과 타이어 등 제품 24종에 대한 2025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율을 설정	폐기물
'24.12.23. ~'25. 2. 3.	하수도법 시행령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통합·수정된 국가기술자격 명칭을 반영하여 기술인력 자격명칭을 현행화	수질
'24. 12.23. ~'25. 2. 3.	하수도법시행규칙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하수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를	수질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연구기관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및 신고 절차 정비	
'24. 12.20. ~'25. 1. 9.	(외부 감축활동 인정 방법)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외부감축량 인정방법 및 기간, 외부감축활동의 시행 및 검증, 산정결과 반영 등을 제정	대기
'24. 12.20. ~ '25. 1.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탄소중립 국가전략·기본계획 등과 관련하여 법률로 상향 입법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고, 탄독위 분과·특별위원회운영 및 탄소중립 정책의 국민참여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계획기간을 조정(5년)하고,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허용하며, 녹색인증·녹색전문기업의 유효기간을 확대(3년)하고, 국제감축사업 지원업무 및 탄소중립포인트제 등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	대기
'24. 12.23. ~'25. 1. 3.	(생활 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별 상한액을 설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반입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 반입협력금 금액, 부과방법 세부 내용 등을 고시로 제정	폐기물
'24. 12. 30. ~ '25. 1.10.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식품접객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변심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일회용품 과태료를 처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화	폐기물

###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16건)

발의일자 (발의자)	법령명	주요 내용	진행
'24. 11. 29. (박용갑의원 등 10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에 운행되던 경유차도 내구연한인 13년이 지나면 운행이 금지되나,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이전에 사용되어 온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례를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그 기준을 변경	위원회 회부 (12. 2)
'24. 11. 29. (박용갑의원 등 15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2024년 1월	위원회 회부 (12. 2)

		1일부터는 경유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나,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	
'24. 12. 2. (진성준의원 등 10명)	물관리기본법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안건에서 유역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는 해당 유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서 유역에 관련된 사항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개정	위원회 회부 (12. 3)
'24. 12. 2. (이용우의원 등 10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전문공사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위원회 회부 (12. 3)
'24. 12. 2. (이용우의원 등 11명)	수도법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 등 정책 결정기관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의체의 협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위원회 회부 (12. 3)
'24. 12. 2. (이용우의원 등 13명)	한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위원회 회부 (12. 3)
'24. 12. 3. (진성준의원 등 10명)	물관리기본법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유역물관리위원장의 물관리 관련 계획 조정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신설	위원회 회부 (12. 4)
'24. 12. 10. (윤건영의원 등 11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의 주체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판매한 1회용 컵의 경우에는 가맹 본부를 사업자"로 간주	위원회 회부 (12.11)
12.16. (어기구의원 등 11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산점,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과,	위원회 회부 (12.17)

		지원환경성 표지인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실태조사 등을 실시	
12.19. (김성희의원 등 11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측정의 기준에 부합	위원회 회부 (12.20)
12.19. (권철승의원 등 10명)	폐기물관리법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안전기준은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주택 등의 장소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위원회 회부 (12.20)
12.20. (김위상의원 등 10명)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여 먹는물 등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	위원회 회부 (12.23)
12.20. (위성곤의원 등 10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시설은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이면서,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나, 동일한 시설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현행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	위원회 회부 (12.23)
12.17. (김성원의원 등 10명)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용어의 정의를 추가	위원회 회부 (12.18)
12.17. (김위상의원 등 15명)	하수도법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관을 시급히 정비	위원회 회부 (12.18)
'24. 12. 23. (우재준의원 등 10명)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장관이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이에 따른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	위원회 회부 (12.24)
'24. 12. 24. (임이자의원 등 10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기에 앞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	위원회 회부 (12.26)

'24. 12. 26. (이학영의원 등 12명)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적합성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제 처리규정을 적용	위원회 회부 (12.27)
'24. 12. 26. (전진숙의원 등 11명)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안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	위원회 회부 (12.27)

## II. 환경부 최근 정책 추진 동향

### 1.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주요 내용

#### 1) 일정 및 참석 인원

- 일시(장소) : 2024. 11. 11. ~ 11. 24. (아제르바이잔)
- 참석인원 :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6만여명 참석

#### 2) 주요 내용

- 국제사회는 2035년까지 연간 1조 3,000억 달러 이상 기후 투자 확대 협력
  - 연간 3,000억 달러를 선진국 주도로 조성
  -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공여를 장려
-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에 관한 최종합의에 도달
  -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제6.2조) 및 국제감축 실적의 허가절차, 당사국 보고내용의 불일치 식별 및 처리방안, 국제등록부 운영방법 및 추가 기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마련
  - 제6.4조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배출 기준선 및 탄소제거 활동 범위에 대한 표준 합의
  - 제6.4조 감축실적의 허가절차,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방법 등 지침 완성
-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 결정문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건물과 도시 시스템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가 반영

- 감축 행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동 작업프로그램 하에 신설하는 절차 마련
- '바쿠 적응 로드맵'이라는 새로운 논의 공간이 창설, 글로벌 적응 목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지표 작업 프로그램'의 내년 작업 일정 및 지표의 형태 등을 결정문에 포함
- 국가 간 기술이전 확대를 목표로 기술이행프로그램 설립 논의 시작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개발도상국 대상 기후기술 지원을 강화한다는 프로그램 설립 목적 합의, 구체적 내용과 자원 조달 방식 미합의

## 2.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주요 내용

### 1) 일정 및 참석 인원

- 일시(장소) : 2024. 11. 25. ~ 12. 2.(부산)
- 참석 인원 : 전 세계 178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등 3천여명 참석

### 2) 주요 내용

-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협약 성안 미 도출
-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 방안, 자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
- 부산에서 이루어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중재안 제안
  - 2025년 추가 회의를 개최하고 협상 지속 추진신규담 14개 중 4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얻었고 강제로 추진하지 않음

## 3. 2025년 정부 및 환경부 예산 현황 주요 내용

### 1) 정부 예산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1조원 감액되어 677.4조원에서 673.3조원으로 축소
  -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5%
-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 651.8조원에서 651.6조원으로 0.3조원 감액

2) 환경부 예산

- 2025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024년(14조 3,493억원) 대비 3.1% 증가한 14조 8,007억원 확정
-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5억원 감액 조정
  -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15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97억 원) 등 감액

환경부 사업별 예산				
(단위 : 억원, %)				
분야	'24 예산 (A)	'25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125,060	129,839	4,779	3.8
○ 기후·탄소	44,959	46,266	1,307	2.9
○ 물관리	60,696	63,977	3,281	5.4
○ 자연환경	8,360	7,883	△477	△5.7
○ 자원순환	2,618	3,173	555	21.2
○ 환경보건·화학	2,954	2,916	△38	△1.3
○ 환경일반 등	5,473	5,624	151	2.8

3) 2025년 환경연구 기술개발 지원사업

- 환경부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2025년도 환경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를 공모
    - 총 11개 사업, 22개 신규과제 추진 (약 390억원)
    - 24.12.19 ~ '25.1.22 접수, 적정성 검토 후 신규과제 확정 (3월)
    -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화, 환경보건·화학 안전망 구축 등 4대 중점영역에 포함된 11개 사업 총 22개 과제에 대해 정부 지원금 지원
- ※ 2025년도 환경부 연구개발 예산 규모 3,489억원 (전년 대비 15.8% 증가)

-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기술 개발' 등 4개 과제에 118억원을 투자하여 탄소중립 이행기반 지원
  - 기후위기에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지하수 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등 6개 과제에 90억원을 지원
-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순환이용을 위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및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한 재활용 기술개발' 등 4개 과제 78억원 투자
- 국민 건강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무인기·센서 기술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망 기술개발'과 '생활화학제품 함유 유해물질 저감 기술개발' 등 8개 과제에 104억원 지원
  - ※ 추진체계 : 총괄기관(환경부),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III. 환경부 인사 동향

발령일자	대상자	前 근무지	現 근무지
'24. 12. 11.	서기관 원경하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환경연구관 이재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
'24. 12. 16.	부이사관 박찬용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명예퇴직
	과학기술서기관 강승희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부이사관 임필구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	명예퇴직
	부이사관 조광석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	명예퇴직
24. 12. 26.	고위공무원 홍정섭	환경부	명예퇴직
	고위공무원 배치호	해양수산부 국립과학연구원	교육훈련(캐나다)
	고위공무원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	명예퇴직
'24. 12. 27.	고위공무원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	임기 연장(1년)

'24. 12. 30.	서기관 김재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서기관 지용상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팀장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수석전문관 임충묵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팀장	파견근무(충청북도청)
'25. 1. 1.	서기관 정윤환	자연보건국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	환경부
	서기관 송나래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 관련 구성원

### 오정민

변호사

T 02.3404.6529

E jeongmin.oh@bkl.co.kr

### 방종식

외국변호사(New York)

T 02.3404.7588

E jongsik.bang@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